

충청북도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2년 10월 1일

○ 회부일자 : 2002년 10월 2일

다. 상정일자 : 2002년 10월 16일

○ 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교육사회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(복지환경국장 박환규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·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
- 묘지의 증가로 인한 도내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·납골시설 이용을 적극 확산·유도하여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에 있음.

나. 주요골자

- 도지사는 장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묘지등의 수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제3조)
- 장사시설중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지정 및 봉파·침수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묘지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시·군조례로 정하도록 함(제4조·제5조)
- 보존묘지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문화재 등에 조예가 깊은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(제7조)
- 향토사적·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를 도보존묘지 또는 도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임석규)

- 먼저 동조례안의 목적과 취지를 살펴보면 도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바람직한 장례문화를 유도 확산시키기 위해 시의성 있는 사안으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 됨.

※ 인천광역시 조례 제정 : 2002. 5. 27

- 그러나 상위법인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·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의 준수여부를 살펴보면
 - 동 조례안 제3조는 수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, 상위법시행령 제3조는 중·장기계획을 3년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
 - 동 조례안 제8조는 보존묘지등의 지정을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, 상위법 제29조에는 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.
 -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심의와 중·장기계획을 3년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는 규정의 삽입여부에 대하여는 종합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.

4. 결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·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과 중·장기계획의 수립기간, 그리고 기타 조례에 위임한 필요한 사항을 추가 삽입·보완하여
- 상위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시키고 일부조항의 문맥과 자구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동 조례안 제3조 중
 - “포함하여”를 “포함한”으로
 - “수급계획을”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·장기계획을 3년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는 계획”으로 각각 변경 함.
- 안 제7조에 제③항을 신설하여 “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”로 함.
- 동 조례안 제8조 중
 - “보존묘지등의 지정을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” 것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”할 수 있도록 함.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첨부서류

가.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

충청북도장사시설에 관한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205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2.10.16

제안자 : 이기동의원

1. 수정이유

- 장사동에관한법률 및 시행령·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과 중·장기계획의 수립기간, 그리고 기타 조례에 위임한 필요한 사항을 추가 삽입·보완하여
- 상위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시키고 일부조항의 문맥과 자구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동 조례안 제3조 중
 - “포함하여”를 “포함한”으로
 - “수급계획을” 장사동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·장기계획을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는 계획”으로 각각 변경 함.
- 동 조례안 제7조에 제③항을 신설하여 “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”로
- 동 조례안 제8조 중
 - “보존묘지등의 지정을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” 것을 장사동에관한법률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”할 수 있도록 함.

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

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○ 안 제3조 중

- “포함하여”를 “포함한”으로,
- “수급계획을”
“수급에 관한 중·장기계획을 3년이상의 기간을 단위로”

○ 안 제7조에 제③항을 신설하여 “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”로

○ 안 제8조 중

- “이를 도보존묘지등으로”를 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물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<p>제명 :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</p>	<p>제명 : 현행과같음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현행과같음)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"장사시설"이라 함은 묘지·화장장·납골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. 2. "평장"이라 함은 시체 및 유골을 지하에 매장한 후 통분을 만들지 아니하고 상석·비석등도 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게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. 	<p>제2조(현행과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*) 2. (*)
<p>제3조(묘지등의 수급계획) ①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묘지·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계획(이하 "묘지등수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화장·납골의 확산과 장사문화 개선지원 2.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·홍보활동의 전개 3.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 유도 <p>②시장·군수는 도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중·장기 묘지등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p>	<p>제3조(묘지등의 수급계획) ①----- -----포함한----- -----수급에 관한 중·장기계획(이하 "묘지등수급계획"이라 한다)을 3년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같음) 2. (*) 3. (*) <p>②(*)</p>
<p>제4조(납골시설의 설치장소) 납골묘·납골탑 및 납골당 등 납골시설(공설납골당 및 종교단체·재단법인 이 설치하는 납골당은 제외)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도로·철도·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,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,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.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관할 시장·군수가 지역 여건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 	<p>제4조 (현행과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*) 2. (*)
<p>제5조(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) 붕괴·침수등 재해가 발생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등 묘지등의 설치제한 지역은 시·군 조례로 정한다.</p>	<p>제5조 (현행과같음)</p>

제정안	수정안
<p>제6조(표지등의 사전매체 등) 공설표지의 수급을 위하여 표지의 사전매체 등을 허용하는 요건은 시·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 (현행과같음)</p>
<p>제7조(보존표지심사위원회의 구성) ①중정북도보존표지심사위원회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관계공무원, 학식과 덕망이 있고 문화재등에 조예가 깊은 자, 관련 기관·단체에서 추천한 자등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	<p>제7조 ①(현행과같음)</p> <p>② (*)</p>
<p>(신설)</p>	<p>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
<p>제8조(보존표지등의 지정기준) 도지사는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표지등에 관하여는 이를 <u>도보존표지등</u>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보존표지 또는 도보존분묘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</p>	<p>제8조(보존표지등의 지정기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향토사적·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표지 또는 분묘 2. 애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표지 또는 분묘 3.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수 주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자의 표지 또는 분묘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같음) 2. (*) 3. (*)
<p>제9조(도비의 보조) 도지사는 도내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·관리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시·군에 보조할 수 있으며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</p>	<p>제9조(현행과같음)</p>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시설의 설치 및 개·보수 2. 공설·공동묘지의 재개발·공원화사업 3. 시·군 시험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4. 인접 시·군간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관리 5.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의 전개 등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같음) 2. (*) 3. (*) 4. (*) 5. (*)
<p>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0조(현행과같음)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(현행과같음)</p>